

소방안전관리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999.3.1		16		
2	1999.12.1		17		
3	2006.7.1		18		
4	2018.10.22		19		
5	2020.11.30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 2020.11.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에서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30.>

제2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 ① 사무처장을 소방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소방계획의 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개정 2020.11.30.>

② 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한다.<개정 2018.10.22., 개정 2020.11.30.>

③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건물 및 실별 소방안전담당 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11.30.>

제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1.30.>

1. 소방계획의 작성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신고, 피난 등의 훈련
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정비
4. 화기취급의 감독
5.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6.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개정 2020.11.30.>

제4조 (공사담당자의 준수사항) 본 대학교 내에서 공사를 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1. 용접, 기타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작업의 실시에는 있어서는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개정 2020.11.30.>
2.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3.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모닥불 등의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4. 위험물류의 사용은 그 때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것
<개정 2020.11.30.>
5. 소방안전관리는 작업책임자가 책임을 질 것<개정 2020.11.30.>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에의 연락)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0.>

1. 임시로 화기를 사용할 때
2. 건축물 및 각종 설비기구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

제6조 (화기의 사용제한)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화재정보 발령시 화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2. 흡연 금지 장소 혹은 흡연 장소의 지정

제 2 장 소방안전관리 조직 등

제7조 (소방안전관리 조직) ① 평소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물별 소방안전담당 책임자 및 각실별로 화기 책임자를 둔다.<개정 2020.11.30.>

② 소방용 설비, 피난설비, 기타 화기사용시설에 대해서 적정관리와 기능보유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밑에 아래와 같은 점검 검사반을 둔다.
<개정 2020.11.30.>

1. 건축물 등의 검사반 : 건물의 방화벽, 방화문, 배연설비 등의 방화구획의 위치, 구조 및 내장, 방염 등의 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
2. 화기사용시설 검사반 : 프로판 가스, 재난용 기구, 연료저장, 회적장, 흡연 장소 등의 화기사용개소의 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
3. 전기설비 검사반 : 전기배선, 전기기기 등의 예방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
4. 위험물 대량 가연물 검사반 :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
5. 소방안전 순찰반 : 소방안전 순찰에 관한 임무 담당<개정 2020.11.30.>
6. 기계설비 검사반 : 기계설비 축수의 과열방지, 펌프 등에 의한 화재위험의 제거 임무 담당
7. 소화설비 검사반 : 소화설비 기구의 점검정비의 임무 담당
8. 경보설비 정비반 : 경보설비 기구 등의 점검정비의 임무 담당
9. 피난설비 점검 정비반 : 피난계단, 비상구, 기타 피난 시설기구의 점검 정비 등의 임무 담당
10. 소방용수 등의 점검 정비반 : 소방용수 등의 기능 및 장애물 제거, 관리 및 검사의 임무 담당

제8조 (소방안전담당 책임자의 의무) 건물별 소방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1. 해당 건물 화기책임자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협조<개정 2020.11.30.>

제9조 (화기책임자의 업무) 화기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1.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
2. 화기사용 설비기구 등의 점검, 안전장치의 작동 확인 또는 소화 단, 각건물의 담당요원은 각실을 수시로 순찰(전기, 수도, 난로, 휴지통 등을 점검) 하고 그 이상유무를 소방안전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제10조 (자체검사 및 정비계획) 자체검사는 화재위험도, 건축물의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7조 제2항과 같이 점검책임자를 지정, 연간 또는 월간 계획에 의거 점검

실시한다.

제11조 (소방용 기계기구의 점검정비) 소방용 기계기구의 점검정비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소방시설의 점검

점검항목	설비구분	실시방법		비고
		시기	횟수	
외관점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6, 12월 " "	2회 이상 " "	
기능시험	소화설비 경보설비	3, 9월 "	2회 이상 "	
청 소	소방설비기구	수 시		

2. 건축물 및 화기사용시설의 점검 등

검사대상	검사횟수(월)	검사대상	검사횟수(월)
건축물	연 2회 (3, 9)	위험물시설관리	연 5회 (1,2,3,11,12)
화기사용설비	연 7회 (1,2,3,5,8,11,12)	전기설비	연 2회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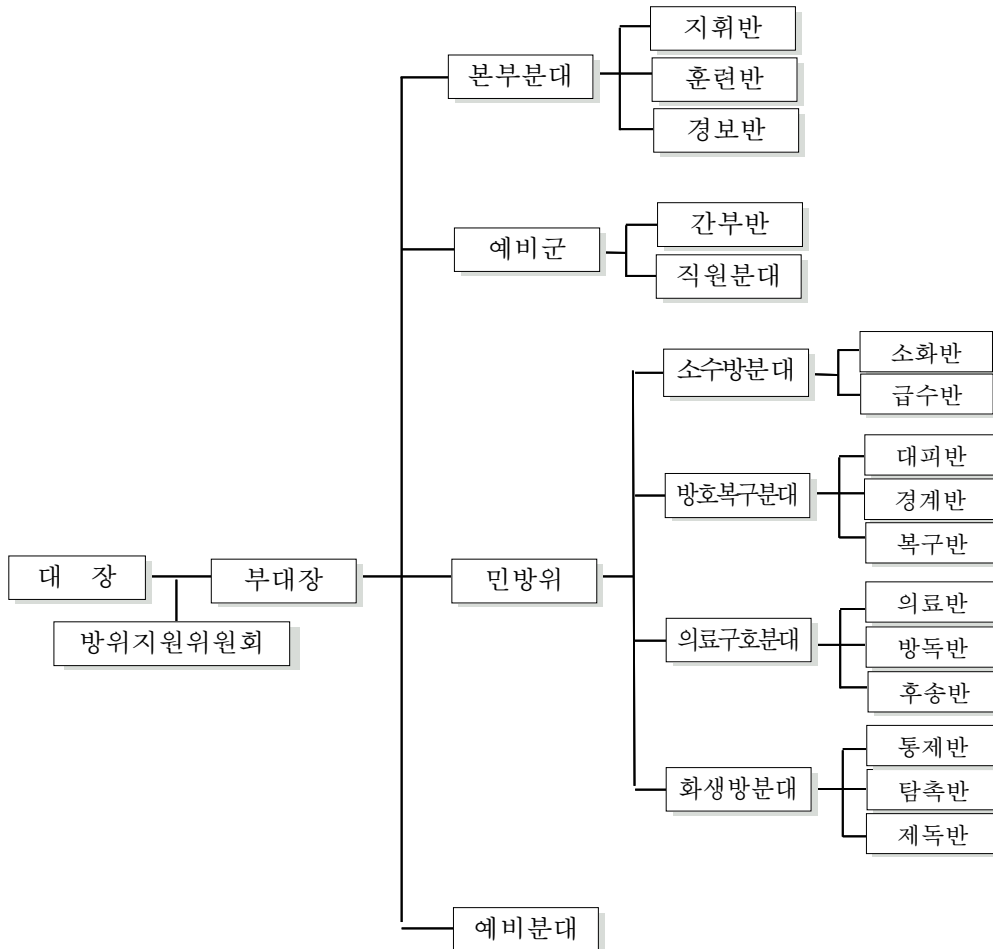
제12조 (자체검사 및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 전조의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 후 각 점검 검사반장은 그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제13조 (불비결함의 정비) 소방안전관리자는 각종 점검 및 검사결과에 있어 결함 사항에 대하여서는 즉시 보수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제 3 장 자위 소방 활동

제14조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 화재 발생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를 최소화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총장을 대장으로 하는 자위소방대를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0.11.30.>

1. 자위소방대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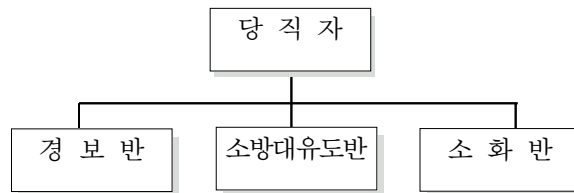


2. 직장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지휘반 : 총장, 사무처장 순으로 임무수행
- 나. 훈련반 :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연간소방계획 수립<개정 2020.11.30.>
- 다. 경보반 : 화재발생시 자체통보 및 소방서 신고, 관계기관 통보
- 라. 소화반 : 화재발생시 방수 및 소화기구 사용
- 마. 급수반 : 수리의 보존과 급수 운반 보급
- 바. 대피반 : 화재시 인명대피유도 및 주요서류 물건 등 반출이동
- 사. 경계반 : 비상경계 및 반출물건 경비 출입인원 통제
- 아. 복구반 : 소방시설 운영조작, 방화문 개폐, 기타문의 개방, 소방활동상 장애물 제거
- 자. 의료반 : 질식, 중경상자 응급조치
- 차. 방독반 : 민방위 임무수행
- 카. 후송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 중경상자 지정병원으로 긴급후송 가료조치

제15조 (야간 및 공휴일 활동체제) ① 야간 및 공휴일에 있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한다.

야간 및 공휴일 직장소방대 편성표



- ②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초기 소화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신속히 관할 소방서에 화재의 발생을 통보하고 총장 및 소방안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 ③ 당직자는 화재발견시부터 진화까지의 제반 경과사항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제 4 장 교육훈련

제16조 (교육훈련) 본 대학교의 전 교직원(용역업체근무자포함)에게는 다음과 같이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훈련(지휘, 소화, 신고, 피난, 유도 등) : 연 2회
2. 부분훈련(소화설비, 피난설비, 비상연락, 구호활동 등) : 연 2회
3. 기초훈련(소화활동)
4. 도상훈련

제17조 (훈련실시 결과 통보)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일시, 장소, 훈련종별, 참가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를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한다.<개정 2020.11.30.>

-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훈련을 실시한 후 소방안전일지 또는 업무일지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제18조 (소방안전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안전, 소화, 피난경보 등의 설비를 최대한 확보 운영한다.<개정 2020.11.30.>

제 5 장 상벌 및 변상

제19조 (상벌 및 변상)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와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직원의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를 게을리 함

으로써 화재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처벌 및 변상을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 6 장 준 용

제20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0.11.30.>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한다.<개정 2020.11.30.>
2.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1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